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2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이양수 · 박준태 · 서범수
김소희 · 강대식 · 김미애
이달희 · 박정하 · 이현승
이종욱 · 최은석 · 이철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유가족에게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75세 미만 유가족 등에게는 의료지원이 제한됨.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 지원을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을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를 “제2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를 “의료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료지원) ① (생략)	제17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가의 의료기관</u>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u> 에서 진료한다.	② ----- ----- ----- <u>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u> ----- ----- -----.
<신설>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u>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신설>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u> (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u> 위탁할 수 있다.	③ ----- <u>제2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 <u>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u>	⑤ ----- ----- <u>보훈병원과 공공의료</u>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 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 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 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 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u>보훈병원이나 다른 의 료기관에</u>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 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은 「<u>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u>」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 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 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한다. ⑦ · ⑧ (생략)	<u>기관</u>----- ----- -----. ----- ----- ----- ----- ----- ----- ----- --<u>의료기관에</u>----- -----. ⑥ ----- ----- ----- ----- -- <u>보훈병원과 공공의료기관</u>-- ----- ----- -----. ----- ----- ----- ----- --. ⑦ · ⑧ (현행과 같음)
--	--